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1,714,076	11,451,422
일반회계	351,778,524	10,553,356
특별회계	29,935,552	898,067
기타특별회계	29,935,552	898,06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62,919	88,8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7,850	20,936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062,055	211,862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17,390	33,52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677,109	50,313
수질개선 특별회계	8,282,619	248,479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7,910,000	237,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225,610	6,76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99,91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